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의 위임규정 삭제(현행 제1조의2 삭제)

나. 운영세칙의 수립·시행 기관 추가(안 제5조)

-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되었고, 해양경찰청이 향후 독립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므로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시행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해양경찰청’을 추가함.

다. 실무협의회 위원 증원(안 제15조)

- 1)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추가되어 실무협의회 위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5명”을 “6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조의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u>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u><삭 제></u>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u>경찰청장</u>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 ----- <u>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u>----- -----.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u>5명</u>으로 한다.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 ----- ----- ----- ----- ----- ----- <u>6명</u>----- -----.

< 의안 소관 부서명 >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712